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년월일 : 2014. 8. 8.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 조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
-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24명으로 확대(안 제22조제2항)
- 나.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방법 개선(안 제22조제3항)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운영, 시민의견 수렴 활동 및 주민 참여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안 제28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20명 이내로 하되”를 “2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 분과별 소관 국장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위원장이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해 2명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설치 및 구성) ①(생략)</p> <p>② <u>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민·관 동수로 구성한다.</u></p> <p>③ <u>민관협의회 의장은 시장과 위원회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된다.</u></p> <p>④(생략)</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생략)</p> <p>② <u>시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p>	<p>제22조(설치 및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 <u>2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u> -----.</p> <p>③ ----- -----, <u>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 분과별 소관 국장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위원장이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해 2명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p>④(현행과 같음)</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련법령	<p>□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p> <p>□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간 예산액이 1억원 미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수당 : 30,500천원
 - 예산정책토론회 운영 : 36,000천원
 - 주민참여예산 교육 : 1,800천원
 - 기타 : 20,300천원

4. 작성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정연용